

계약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수의계약 관련 금액 및 기준 등에 대해 국가계약법 준용하여 '23년 국정감사시 위원 요구사항 해소

2. 주요골자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조정(제36조 제2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수의계약 기준 마련(제36조 제20호)

3. 시행일 : 2023. . .

계약 규정 일부개정

「계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로 한다.

제36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제19호까지의 규정”은 “제20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2.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인 계약의 경우. 다만, 경제사업 관련 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4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 2억원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1억6천만원

라.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동산·부동산의 매각 등 그 밖의 계약 : 2천만원

2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

약의 경우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경우
- 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36조의3 제1항 중 “제36조 제20호의 경우에는”을 “제36조 제21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6조 제20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부칙 <2023. . . >

- ①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 그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계약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제14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1년 이내 감정평가한 가격 2. ~ 3. <생략>	제14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1년 이내 감정평가한 가격 2. ~ 3. <현행과 같음>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근거 법률 변경
제3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5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4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제3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5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인 계약의 경우. 다만, 경제사업 관련 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4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 2억원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수의계약 관련 금액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준용 및 '23년 국정감사시 위원 요구사항 해소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그 밖의 계약을 할 때. 다만, 경제사업 관련 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 19. <생략> 20. <신설>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1억6천만원 라.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동산·부동산의 매각 등 그 밖의 계약 : 2천만원 3. ~ 19. <현행과 같음> 2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경우 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준용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u>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u> 이외에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	<u>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u> <u>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u> 이외에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	
제36조의3(계약심의위원회 설치) ① 계약담당자는 <u>제36조제20호의 경우</u>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략>	제36조의3(계약심의위원회 설치) ① 계약담당자는 <u>제36조제21호의 경우</u>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조항 순서 변경
제40조(견적서의 제출요구) ① <생략> 1. ~ 2. <생략> 3.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u><단서 신설></u> ② <생략>	제40조(견적서의 제출요구)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u>다만, 제36조 제20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u> ② <생략>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준용